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같은 항 제16호의 서류는 공유주방의 소재지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설명서”를 “설명서(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하는 시설의 장소,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유주방을 이용하게 할 영업의 종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의3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유주방을 이용하게 할 영업의 종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4.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8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 제9호”로 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 수행 일자, 내용,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는 새로 선임된 위생관리책임자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해당 교육주기마다 3시간 이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위생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

년 1회.

④ 법 제41조의2제9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 실시 기관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별표 14 제1호자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10.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등

- 1)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사용할 작업장, 소분실 등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2)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사용할 영업장, 조리장 등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가. 1)영업장, 2)조리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는 식별 표지를 하여야 한다.
- 2)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사용할 식품

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취급시설 등은 공유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화장실에 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마. 화장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검사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사용할 검사실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사. 검사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공유주방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별도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공유주방의 내부 및 기계·기구 등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
- 3) 위생관리책임자가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자.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공유주방의 내부 및 기계·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
- 3) 위생관리책임자가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별표 17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식품소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공유주방의 내부 및 기계·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
- 3) 위생관리책임자가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도.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공유주방의 내부 및 기계·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위생관리책임자가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별표 17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의 제조·가공·소분·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영업 중인 공유주방 이용 영업자에 한한다)는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중독 및 이용자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생관리 계획에 따라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41조의2제1항·제8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위생관리책임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

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3 II 제1호 중 “식품조사처리업 및”을 “식품조사처리업,”으로, 같은 호 중 “용기·포장류제조업”을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한다.

별표 23 II 제1호 표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23 II 제1호 표 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9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위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지 제33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 중 “공장규모”를 “공장 및 영업장 규모”로 하고, 같은 제2쪽 중 “가공장”을 “가공장 등”으로 하며, 같은 제2쪽 중 “공장”을 “공장 및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제2쪽 제4호 중 “위생관리책임자(식품위생교육관련)”를 “위생관리책임자”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㉑란에 참고사항을 ㉒로 하고, 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㉑ 공유주방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 업소명		소재지	
-----------	--------------	--	-----	--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사용하는 시설의 장소,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 공유주방을 이용할 영업의 종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에서 임대할 영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마.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에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의 뒤쪽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신설한다.

7.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영업허가(신고·등록) 관리대장

(제1쪽)

1.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업 소 명			업 종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영업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공장 또는 영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영업허가(신고·등록)조건					
식품등의 유형 (운반업은 차량번호)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는 공유주방 운 영업의 업소명 및 소 재지)					

2.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허가(신고·등록)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80g/㎡]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인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영업의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냉장업 [] 제과점영업			
	종류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용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²] 건물 외부 장소 [m²]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냉장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용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가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삭제 <2019. 11. 20.>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5. 공유주방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제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가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삭제 <2016. 6. 30.> 5. 공유주방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1호 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할 영업의 종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44조의2 및 영 제29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 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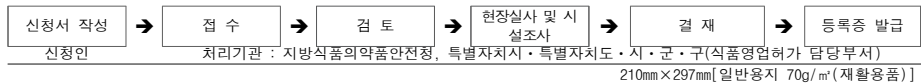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
거나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해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 1부(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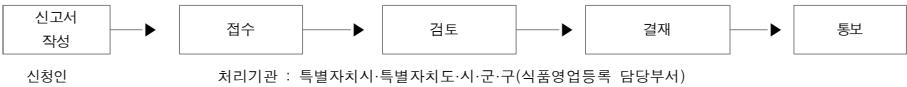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뒤쪽)

선임 안내

1.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농화학·미생물학·유전공학·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위생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 ----- ----- ----- ----- ----- ----- ----- ----- --.
1. ~ 15. (생략) <신설>	1. ~ 15. (현행과 같음) 16. 공유주방의 소재지, 이용시간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조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조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하되,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3호의 서류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 해당하며, 같은 항 제16호의 서류는 공유주방의 소재지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교육시간) ① ----- ----- ----- ----- -----.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1. ----- 제9호까지 ----- ----- -----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1. ----- 제3호, 제9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④ (생 략)	③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법 제41조의2제1

<신 설>

<신 설>

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 제7항에 따라 직무 수행 일자, 내용,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는 새로 선임된 위생관리책임자가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 시간은 해당 교육주기마다 4시간 이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위생상황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④ 법 제41조의2제9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 실시 기관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011